



뉴욕 재개



NEW YORK STATE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비식품 관련 농업 지침

본 지침은 재개가 허용된 뉴욕주 지역의 모든 비식품 관련 농업 활동을 비롯해 이전 필수 운영을 허용받은 주 전역의 비식품 관련 농업 활동에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농업 사업체는 비식품 관련 농업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물리적 거리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활동의 안전 또는 핵심 기능에 더 짧은 거리가 필요하지 않는 한 직원 간 6피트 거리를 확보하십시오. ✓ 직원 간의 거리가 6피트 미만인 경우, 직원은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 ✓ 모든 실내 작업에 대하여, 시설 핵심 안전 기능(장비 보수점, 창고 및 요금 구역 등)을 수행하기 위해 더욱 많은 직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추가적인 완화 전략을 시행(항상 페이스 커버 착용 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자를 제외한 현장 인원은 점유 등록서에 명시된 특정 구역의 최대 수용 인원의 50 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모든 사람이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지 않는 한, 좁은 공간(엘리베이터, 호이스트 등)에 한 번에 한 명만 있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점유하는 경우 최대 수용 인원의 50 퍼센트 미만으로 점유해야 합니다. ✓ 비필수 대면 모임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제한합니다. ✓ 판매/교매, 레슨, 승마를 위해 말과 기타 동물을 보는 것은 반드시 야외 장소 또는 구역에서 예약자에 한해 실시해야 하며, 고객과 직원 간에 엄격하게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을 위한 추가 공간을 만들어 현재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만 대기하도록 하고, 소매 영업 시간을 제한하여 긴 시간동안 직원 및 고객의 이동을 분산하며, 도착/출발 시간을 교대로 설정하고 A/B 팀을 분리합니다. ✓ 좁은 통로, 복도 또는 공간에서 화살표가 표시된 테이프 또는 표지를 활용하여 양방향 이동량을 완화합니다. ✓ 근무 공간 및 직원 좌석 수를 변경/제한하여 6 피트 거리를 유지하고 복수의 직원 및/또는 팀이 한 구역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합니다. ✓ 만약 가능하지 않은 경우, 페이스 커버를 제공하고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공기 흐름, 난방, 냉방, 환기 등을 방해하지 않는 구역에 물리적 장벽(플라스틱 차단벽 등)을 OSHA 지침에 따라 설치합니다. ✓ 비식품 관련 농업 제품의 직접 판매를 촉진할 대안을 생각합니다. 대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 또는 하우스/너서리 주차 구역시장 픽업 등 기타 창의적인 구매 솔루션. ✓ 설치, 태그 부착, 측량 및 수확 등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는 고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예약에 한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판매는 야외에서, 고객과 직원 간의 엄격한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실시합니다. 고객은 테이블이나 전식 식물 근처에서 지나치게 오래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 가능한 경우 전화 또는 화상 회의를 진행합니다. 필수 대면 모임(회의 등)은 참가자들 사이에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개방적이고 통풍이 잘되는 공간에서 개최해야 합니다. ✓ 테이프 또는 표지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및 기타 적용 가능한 현장 영역(출퇴근 기록 스테이션, 건강 선별 스테이션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마커를 표시합니다.

STAY HOME.

STOP THE SPREAD.

SAVE LIVES.



뉴욕 재개



NEW YORK STATE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비식품 관련 농업 지침

본 지침은 재개가 허용된 뉴욕주 지역의 모든 비식품 관련 농업 활동을 비롯해 이전 필수 운영을 허용받은 주 전역의 비식품 관련 농업 활동에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농업 사업체는 비식품 관련 농업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물리적 거리두기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픽업 및 배달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필수 방문객의 현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보호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는 직원에게 무료로 허용 가능한 안전 가리개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교체할 가리개를 적절히 공급해야 합니다. ✓ 허용되는 페이스 커버에는 작업 특성 상 더욱 엄격한 PPE(N95 인공 호흡기, 페이스 쉴드 등)이 요구되지 않는 한, 천 소재(수제 봉제, 킥 컷, 두건) 및 의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페이스 커버는 사용 후 또는 손상되거나 더러워졌을 때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공유할 수 없으며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 물건(도구, 기계, 차량 등)의 공유를 제한하고 공유 표면을 만지지 않도록 하거나, 공유 물체 또는 접촉이 잦은 구역과 접촉할 때는 장갑(업무 관련 또는 의료)을 착용하거나, 접촉 전후에 손을 소독하거나 씻으십시오. 	
위생, 청소 및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및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의 위생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날짜, 시간 및 청소 범위를 기록한 청소 일지를 현장에 유지하십시오. ✓ 비누, 물 및 종이 타올로 손을 씻는 것 또는 손 씻기를 실행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알코올을 60 퍼센트 이상 함유한 알코올 성분 손소독제를 포함하여 직원을 위한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 및 유지합니다. ✓ 직원들이 자주 접촉하는 공유 표면을 사용하기 전후에 청소 및 소독 용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 후 손 위생 조치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하면 안전 예방 조치를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로 환기합니다(창문 및 문 열기 등). ✓ 직원이 집에서 점심을 가져 오도록 권장하고 직원이 식사를 하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STAY HOME.

STOP THE SPREAD.

SAVE LIVES.



뉴욕 재개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비식품 관련 농업 지침

본 지침은 재개가 허용된 뉴욕주 지역의 모든 비식품 관련 농업 활동을 비롯해 이전 필수 운영을 허용받은 주 전역의 비식품 관련 농업 활동에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농업 사업체는 비식품 관련 농업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위생, 청소 및 소독(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매 근무 후, 매일, 혹은 필요하다면 더욱 자주 정기적으로 청소 및소독을 실시하고 공유 물품(도구, 기계, 컨트롤 패널, 키패드 등) 및 표면을 포함하여 화장실과 공용 구역 등 사람의 이동이 잦은 구역은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고 인증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 을 사용하여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합니다. ✓ 청소 또는 소독 제품이나 청소 및 소독 행위가 안전 상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소재나 기기를 손상하는 경우, 직원은 사용 중 손 위생 스테이션을 사용 및/또는 일회용 장갑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 식품/음료의 공유를 금지합니다(뷔페 스타일 식사).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가 지정한 업계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이행할 것임을 보증해야 합니다. ✓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원에게 상기시키도록 현장 전체에 표지판을 게시하십시오. ✓ 현장에 완성된 안전 계획을 눈에 띄게 게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관된 수단으로 직원, 방문자 및 고객을 위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합니다.



뉴욕 재개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비식품 관련 농업 지침

본 지침은 재개가 허용된 뉴욕주 지역의 모든 비식품 관련 농업 활동을 비롯해 이전 필수 운영을 허용받은 주 전역의 비식품 관련 농업 활동에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농업 사업체는 비식품 관련 농업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토콜을 교육하고 안전 지침을 자주 전달합니다. ✓ 아픈 직원은 직장에서 병에 걸렸다면 자택으로 돌아가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 ✓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 건강 선별 검사(설문지, 체온 검사 등)를 진행하며, (1) 지난 14일간의 코로나19 증상, (2) 지난 14일간 코로나19 검사 양성 결과 및/또는 (3) 지난 14일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자와 근접 또는 밀접한 접촉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입장할 수 없으며 진단 및 검사를 받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는 지침을 받고 자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확진 사례를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자에게 의료 및 테스트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양성 사례를 대비해 청소, 소독 및 접촉 추적 계획을 세우십시오. ✓ 반드시 이러한 선별 프로세스에서 수집한 모든 응답을 매일 검토하고 해당 검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반드시 설문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나중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개인의 보고를 받을 당사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 통보하기 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원격 선별(전화 또는 전자적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 적절한 PPE나 비접촉 수단을 통해 실시하는 배송을 제외하고 직장 또는 지역의 다른 개인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직원 및 방문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연속적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현장 선별자는 고용주가 임명한 CDC, DOH 및 OSHA 프로토콜 숙지자가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소한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여 적절한 PPE를 착용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 직원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한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경우 프로토콜과 정책에 대해서는 DOH 지침을 참조하십시오...